

정당·국회의원·후원회를 위한
정당·정치자금법규 운용자료

www.nec.go.kr





일러두기

이 책자는 정당·국회의원·후원회가 정당·정치자금법규의 주요내용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규운용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법 조항을 중심으로 법규내용, 선례 및 판례를 수록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자는 2011. 12월 현재의 정당·정치자금법규 등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후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이 있는 경우 내용이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책자의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 원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정보광장-정당정보-정당자료」란에서 내려받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목차



정당법

002 I. 개요

- 002 1. 정당의 구성
- 003 2. 창당절차의 흐름도

004 II. 창당준비위원회

- 004 1. 창당활동
- 004 2. 발기인
- 005 3. 결성신고
- 006 4.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
- 006 5. 창당집회의 공개
- 007 질의선례 및 판례

008 III. 정당의 성립과 소멸

- 008 1. 정당의 성립
- 008 2. 등록신청
- 010 3. 변경등록
- 010 4. 정당의 합당
- 012 5. 정당의 소멸
- 014 질의선례 및 판례

017 IV. 정당의 입당과 탈당

- 017 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 018 2. 입당
- 019 3. 탈당
- 020 질의선례 및 판례

023 V. 정당의 운영

- 023 1. 강령의 공개
- 023 2.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 024 3. 정당의 기구
- 024 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 025 5. 당비
- 025 6. 서면결의금지
- 025 7. 정기보고
- 026 질의선례 및 판례

028 VI. 정당활동의 보장

- 028 1. 정당활동의 자유
- 028 2.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 029 3. 정책토론회
- 029 4. 대체정당의 금지

- 029 5.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 030 6. 강제입당 등의 금지
- 030 7.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금지
- 032 질의선례 및 판례

- 075 질의선례 및 판례

080 IV.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 080 1.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 081 2.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
- 082 3.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 083 질의선례 및 판례

084 V. 후원금 모금방법 및 고지·광고

- 084 1. 후원금 모금방법
- 084 2.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 085 3.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 088 질의선례 및 판례

092 VI. 정치자금영수증

- 092 1.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
- 092 2.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
- 093 3. 후원회의 후원인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 094 4.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 보고 및 반납
- 094 5.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인적사항 통보 요청
- 095 질의선례 및 판례



정치자금법

044 I. 개요

- 044 1. 정치자금의 흐름도
- 045 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
- 047 3. 정치자금 기부제한
- 048 4.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 048 5. 면세
- 049 질의선례 및 판례

066 II. 당비

- 066 1. 당비
- 066 2. 당비영수증
- 068 질의선례 및 판례

070 III. 후원회

- 070 1. 후원회지정권자
- 070 2. 후원회 등록신청
- 071 3. 후원회 겸임지정 신고
- 072 4. 후원회의 회원
- 073 5. 후원회의 사무소 등
- 074 6. 후원금의 모금·기부
- 074 7. 불법후원금의 반환

096 Ⅶ. 후원회 해산 및 잔여 재산 처분

- 096 1. 후원회 해산
- 097 2. 후원회 해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 100 질의선례 및 판례

102 Ⅷ. 기탁금

- 102 1. 기탁금 기탁
- 102 2.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103 Ⅸ. 국고보조금

- 103 1. 보조금의 계상
- 104 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
보조금
- 106 3.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
보조금
- 107 4.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의
배분·지급
- 109 5.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109 6. 보조금의 용도제한
- 110 7. 보조금의 감액
- 111 8. 보조금의 반환
- 112 질의선례 및 판례

116 Ⅹ. 회계책임자의 정치 자금 수입·지출

- 116 1.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 117 2. 회계책임자 겸임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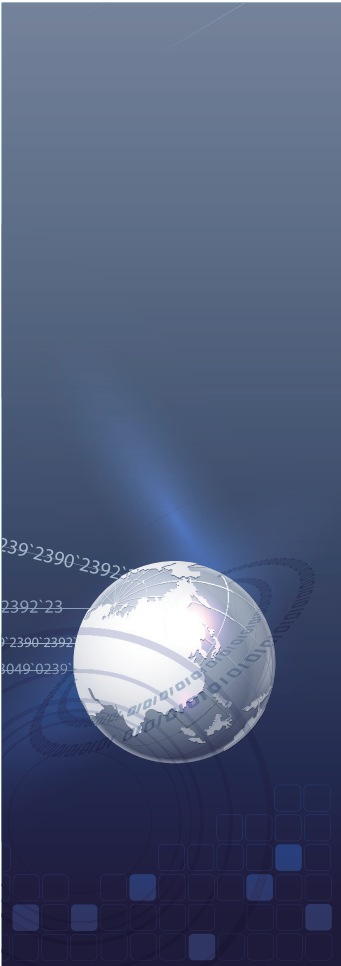
- 118 3.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 119 4.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 119 5.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 용도의 지출
- 120 질의선례 및 판례

125 Ⅺ. 회계보고 및 공개

- 125 1. 정당의 회계보고
- 126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 127 3.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
- 127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
- 128 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
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
- 128 6. 회계보고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 130 질의선례 및 판례

131 Ⅻ.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 132 질의선례 및 판례



정 당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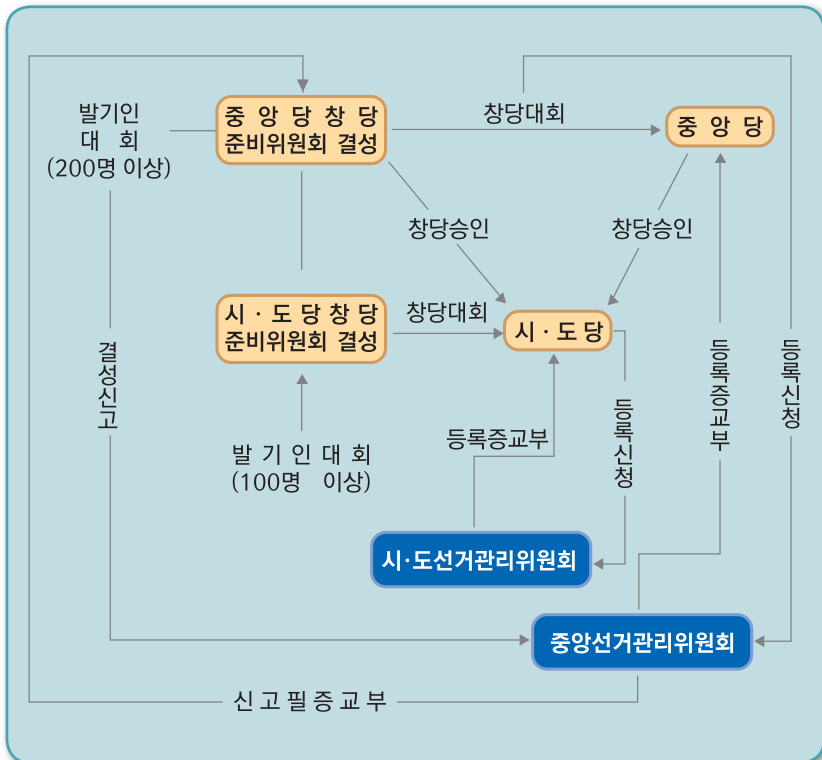
I. 개 요

01 정당의 구성(제3조)

-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
- 중앙당은 수도에 소재하고, 시·도당은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



02 창당절차의 흐름도





Ⅱ. 창당준비위원회

01 창당활동(제5조)

정당의 창당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함

02 발기인(제6조)

- 중 양 당 : 200명 이상
- 시·도당 : 100명 이상



발기인의 자격

-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 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함

- 사립학교의 교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2011. 7. 21.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부칙에 의하여 2012. 7. 22.부터 전임강사의 명칭은 폐지되고 종전의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봄

03 결성신고(제7조)

● 신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 그 대표자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

※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는 신고하지 않음

● 신고사항

- 발기인의 취지

- 정당의 명칭(가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

- 창당준비위원회의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첨부서류 : 발기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발기인 대회 회의록 사본

※ 신고사항 중 “발기의 취지, 정당의 명칭(가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회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04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범위(제8조)

- 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음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활동할 수 있음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된 것으로 봄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된 때에는 그 소속 시·도당(창당활동 기간 중에 창당된 시·도당을 말함)도 함께 소멸

05 창당집회의 공개(제10조)

- 정당의 창당집회는 공개하여야 함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창당집회의 공개를 위하여 집회개최일 전 5일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인터넷신문은 일간신문에 해당하지 않음)에 집회개최공고를 하여야 함



질의선례 및 판례

● 정당 창당 과정에서 당적보유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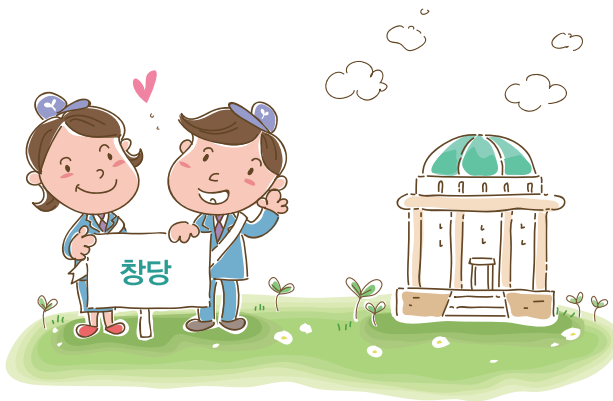
타당의 당적 보유자가 다른 정당을 창당하기 위한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정당법」상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2007. 6. 8. 회답).

● 발기인 아닌 자의 대표자 취임

창당준비위원회의 발기인이 아닌 자는 당해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음(1963. 7. 3. 회답).

● 창당의 목적범위내의 의미

창당의 목적범위는 창당을 위한 조직활동을 말함(1963. 3. 12. 회답).





Ⅲ. 정당의 성립과 소멸

01 정당의 성립(제4조)

-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함
- 정당은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법정시·도당수	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정당은 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함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명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함

02 등록신청(제11조·제12조·제13조)

-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중앙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시·도당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

- 정당의 명칭(약칭을 정한 때에는 약칭을 포함)
- 사무소의 소재지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 간부의 범위 :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자
- 당원의 수
-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시·도당의 소재지와 명칭
-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
 - ※ 첨부서류 :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창당집회의 신문공고에 관한 증빙자료,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 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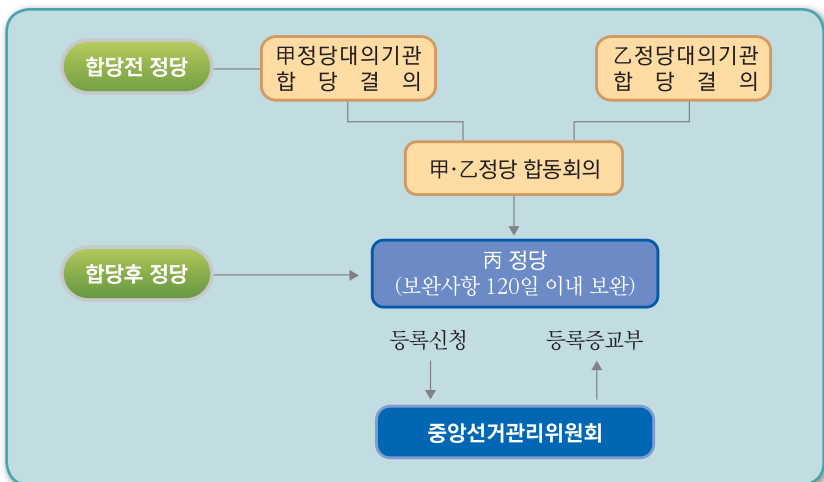
- 정당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 간부의 범위 : 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 당원의 수
- 당인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 ※ 첨부서류 :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

03 변경등록(제1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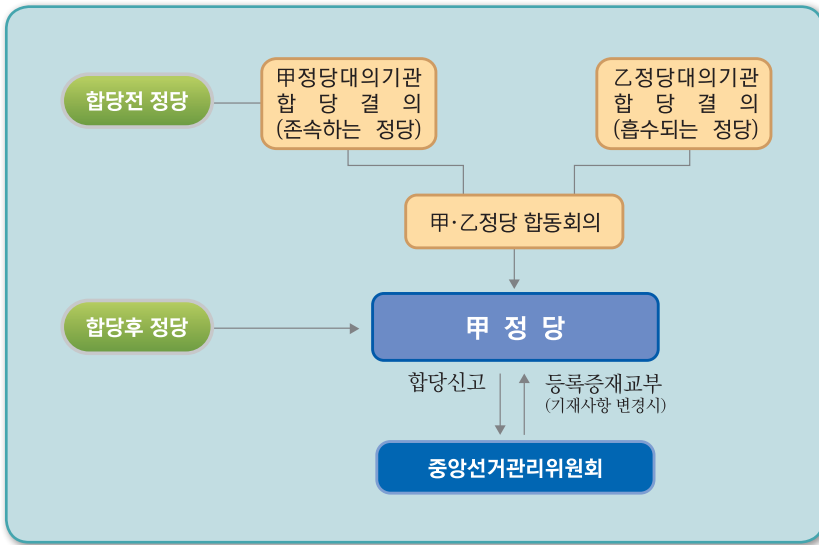
- 등록신청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함)
 - － 사무소(중앙당의 경우 당해 사무소에 한함)의 소재지
 - －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
 - － 대표자·간부의 성명·주소
 - －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04 정당의 합당(제19조·제20조)

- 정당이 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당하는 정당들의 대의기관이나 그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음
- 합당의 방식
 - － 신설합당 : 둘 이상의 정당이 하나의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



- 신설합당에 따른 등록신청
 - 합당으로 신설된 정당의 대표자는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동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 이 경우 시·도당의 대표자는 소재지와 명칭, 시·도당의 대표자의 성명·주소는 등록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음
- 흡수합당 : 하나의 정당이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합당



- 흡수합당에 따른 등록신고

흡수합당으로 존속하는 정당의 대표자는 합동회의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합동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합당된 사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합당의 성립**

- 정당의 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함으로써 성립함

※ 정당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합당된 때에는 선거일 후 20일에 그 효력이 발생

※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소속 시·도당도 합당한 것으로 봄. 다만, 신설합당인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부터 3월 이내에 시·도당 개편대회를 거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당해 시·도당은 소멸된 것으로 봄

● **합당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 등**

- 합당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정당은 합당 전 정당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됨.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봄

05 정당의 소멸(제44조·제46조)

● **등록취소**

-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함
-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참여하지 아니한 때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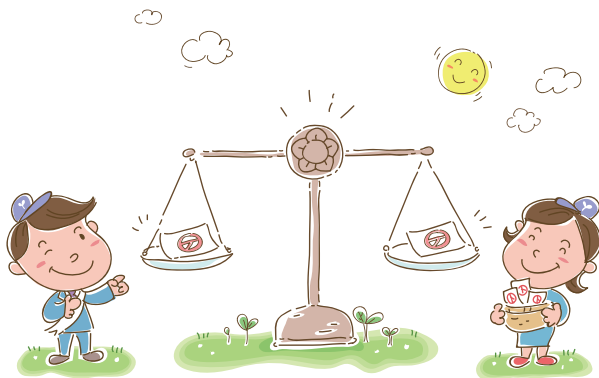
● 자진해산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음
- 정당이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시·도당 창당승인에 대한 취소사유와 절차를 당헌 또는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정하여야 하며, 당헌 또는 규약에서 정한 외의 사유로 창당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의기관에서 투표로 결정하여야 함

※ 정당은 등록취소와 자진해산 외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음(헌법 제8조)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정당간부의 자격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음(1997. 9. 10. 회답).

● 등록된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의 합당

정당의 합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간의 합당을 말하며, 창당준비중인 정당과의 합당은 있을 수 없음(1995. 10. 26, 1963. 7. 27. 회답).

● 기 신고된 2 이상의 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

창당준비위원회는 정당이 아니므로 창당준비위원회의 통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기 신고된 2 이상의 창당준비위원회를 통합하여 제3의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기 신고한 창당준비위원회를 해산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에 신고한 후 새로운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여야 함(1966. 8. 26. 회답).

● 정당합당시 기존당원의 자격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이었다면 합당 후 입당원서를 새로 제출하지 않아도 합당 후 정당의 당원이 됨(1991. 5. 20. 회답).

● 전당대회 회의록의 심사 범위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수리함(1988. 3. 18. 회답).

▷ 판례

● 정당등록제도의 의의

정당등록제도는 정당임을 자처하는 정치적 결사가 일정한 법률상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이 요건이 충족된 경우 정당등록부에 등록하여 비로소 그 결사가 정당임을 법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는 어떤 정치적 결사가 정당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며, 이에 따라 정당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권리·의무관계도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등록제는 법적 안정성과 확실성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6. 3. 30. 결정 2004헌마246).

● 형식적 요건심사의 범위

정당의 헌법상의 지위, 복수정당제 및 정당의 자율성 보장, 위 관계 법령의 규정, 특히 정당 창당등록에 있어서 조차 선거관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흡수합당신고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신고가 정당법 및 정당사무관리규칙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흡수합당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신고의 전제가 되는 결의 자체의 존부 및 효력 여부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10. 26. 선고 2007구합 31621 판결).

● 정당의 합당결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정당법」의 규정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당등록신청에 대하여 형식적인 심사권한 밖에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합당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서 그에 따른 집행행위를 다투는 경우 신청의 이익이 없다(서울고등법원 1996. 2. 29. 판결 95나25635).

● 합당의 법률효과

정당의 흡수합당이라는 법률효과는 단순한 흡수합당 신고서의 제출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친 수리행위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07. 10. 26. 판결 2007구합31621).

●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 승계

「정당법」 조항에 의한 합당의 경우에 합당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강행규정으로서 합당 전 정당들의 해당 기관의 결의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달리 정하였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68969 판결).





Ⅳ. 정당의 입당과 탈당

01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22조)

-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공무원
 -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함
 - － 사립학교의 교원
 -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함
 -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 2011. 7. 21.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부칙에 의하여 2012. 7. 22.부터 전임강사의 명칭은 폐지되고 종전의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봄

02 입당(제23조)

● 입당신청

-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입당신청을 할 수 있음
-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입당신청 처리

-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함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가 제출된 경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함

● 입당의 효력

-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함
-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한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함

※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당원으로 인정되지 않음

03 탈당(제25조)

-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에 제출하여야 함
- 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음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탈당신고 처리
 - －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당해 시·도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 중앙당이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탈당증명서를 교부하고, 해당 시·도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여야 함
- 탈당의 효력
 - － 탈당신고서가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접수된 때에 발생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선거범죄로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의 입당

「정당법」 제22조 및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선거범으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2009년경 공직선거법 제230조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는 2011년 7월에 집행유예가 만료되더라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됨(2011. 8. 26. 회답).

● 사면 및 복권시 당원자격 당면회복

정당의 당원인 자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이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게 되어 정당의 당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입당절차를 거쳐야 함(2008. 1. 15. 회답).

●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의 정당간부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원자격이 없으므로 정당의 간부가 될 수 없음(2005. 9. 15. 회답).

●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당원의 자격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탈당 절차 없이 당원자격이 자동적으로 상실됨(1978. 10. 26. 회답).

●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겸임**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직에 해당하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그 직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취임시에 당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의원직에서 퇴직됨(2008. 2. 19. 회답).

●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의 입당 가능 여부**

국회의장의 비서실장·보좌관·비서관·비서는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2007. 2. 2. 회답).

● **대학강사 및 조교수**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시간강사는 당원이 될 수 있음(1991. 2. 13. 회답).

● **사립대학의 일반행정직원**

사립대학의 일반행정직원은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 함(1995. 2. 10. 회답).

● **사립학교의 서무직원**

사립학교의 서무직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음(1986. 12. 30. 회답).

● **통장·이장·반장**

헌법상 통장·이장·반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거나 공무원의 신분에 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원이 될 수 있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1963. 9. 6, 1998. 5. 1. 회답).

● 외국인

외국인은 「정당법」 제22조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음
(2007. 2. 9. 회답).

▶ 판례

●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의 의미

「정당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소속 지구당의 폐지나 기능마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탈당하고자 하는 당원이 사정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상급당부에 제출하는 경우 등도 그러한 사정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속 지구당에 제출하기 곤란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때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 탈당의사 철회의 효력

탈당신고서가 적법하게 접수되어 탈당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이후 탈당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여 탈당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급당부가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해당 지구당에 통보하여 당원명부의 기재를 말소하게 하고, 탈당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정당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은 탈당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정당의 내부에서 처리할 후속사무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후속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탈당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수57 판결).



V. 정당의 운영

01 강령의 공개(제28조)

- 정당은 그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당헌을 공개하여야 함

02 당헌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제28조)

- 정당의 명칭
- 정당의 일반적인 조직·구성 및 권한에 관한 사항
- 대표자·간부의 선임방법·임기·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당원의 입당·탈당·제명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대의기관의 설치 및 소집절차
- 간부회의의 구성·권한 및 소집절차
- 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
-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03 정당의 기구(제29조)

-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과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가져야 함
- 중앙당은 정당의 예산 및 그 내역에 관한 회계검사 등 정당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검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두어야 함

04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제30조)

- 중앙당 : 100명 이내
- 시·도당 : 총 100명 이내에서 중앙당이 각 시·도당별로 정한 수 이내



유급사무직원의 범위

- 상근·비상근을 불문하고 월 15일 이상 정당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봉급·수당·활동비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그 대가를 제공받는 자를 말함. 이 경우 월 15일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람(청소, 이사 등 일시적으로 단순노무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나 용역업체 직원 등은 제외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들의 근로일수를 모두 합하여 월 15일 이상 매 30일까지 마다 1명을 유급사무직원수에 산입함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 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
 -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

05 당비(제31조)

- 당원의 정예화와 재정자립도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함
-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됨
- 당비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함

06 서면결의금지(제32조)

- 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음
-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함

07 정기보고(제35조)

- 중앙당과 시·도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다음 연도 2월 15일(시·도당은 1월 3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 중앙당은 그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보고하는 때에 당해 연도의 정책 추진내용과 그 추진결과 및 다음 연도의 주요정책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함

- 중앙당과 시·도당은 법정시·도당수 및 시·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흠결이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정당의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정당의 후원당원 운영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후원당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정당법」 상 무방함(2006. 6. 29. 회답).

● 육아휴직자 등의 유급사무직원수 포함여부

육아휴직자·출산휴가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이나 국가 등이 급여·수당 등을 제공하더라도 「정당법」 제30조제1항의 유급사무직원수에는 포함되지 아니함(2007. 2. 12. 회답).

▷ 판례

- **대의원의 투표수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대표 선출**

「정당법」 제29조제1항은 ‘정당은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집행기관인 당 대표의 선출방법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이 전당대회 대의원의 투표수와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하여 위 규정 소정의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집행기관’을 조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당헌개정안이 정당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보전 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아무런 소명이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3. 20. 결정 2004카합550).

- **대의기관의 결의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 금지**

정당법이 정당의 모든 대의기관의 결의에 관하여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당 대의기관 결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결의의 적정성과 신중성을 도모하고 서면 또는 대리인 결의를 통한 형식적인 의사표시로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권자의 진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의결권자가 대의기관의 회의에 직접 참석하고 부의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참여한 다음 이에 기하여 신중하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가급적 정당의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확보하려는 것이고, 위 규정은 그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28. 결정 2011카합342).



Ⅵ. 정당활동의 보장

01 정당활동의 자유(제37조)

-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짐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함)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함
-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음

02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제38조)

「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03 정책토론회(제39조)

- 주관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 대상 :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의 중앙당 대표자·정책연구소 소장 또는 중앙당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
 - 시기 :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제외한 기간 중 연 2회 이상
- ※ 공영방송사는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하여야 함

04 대체정당의 금지(제40조)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함

05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제41조)

- 「정당법」에 의하여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함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함
-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함
-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06 강제입당 등의 금지(제42조)

-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않음.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않음
-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함

07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금지(제50조)

-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을 포함)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당대표경선 등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함)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또한,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 위의 금지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할 수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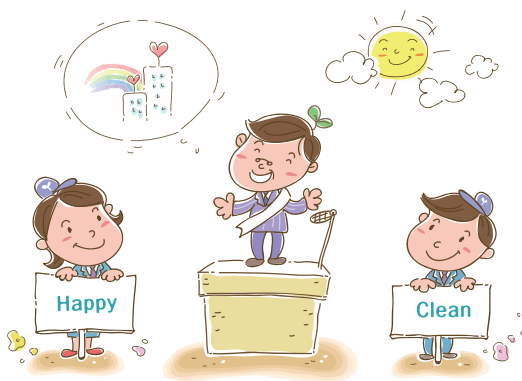
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이하에서 “후보자” 라고 함)가 제공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음식물은 매수금지의 예외에 해당함

-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주류는 제외)
- 후보자 선거운동기구의 개소식에 참석한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주류는 제외)
-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와 선거운동기구에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수[「공직선거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않음] 이내에서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 중앙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30인
 - 시·도당대표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5인
 -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는 당원협의회의 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10인
 - 그 밖에 당직자선출을 위한 선거에 있어서는 5인

※ 위의 내용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범위

- 다과류의 음식물 : 3천원 이하
- 식사류의 음식물 : 7천원 이하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정당법 제37조제2항의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책의 의미

「정당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에는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아이디어, 계획, 방안, 방침’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이 정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2011. 3. 8. 회답).

● 정당의 정책 인터넷광고시 연결페이지의 내용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의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인터넷광고에 선거공약 등이 게재된 연결페이지를 설정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10. 5. 12. 회답).

● 정당의 정책 등 홍보활동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운용

-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모집을 위한 홍보나 정당이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고지벽보 첨부 또는 인쇄물 배부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상 무방함(2010. 2. 26. 회답).

- 정당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 당명개정을 위한 현상공모 고지, 공직선거후보자 지망생 모집,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토론회 개최 사실 등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고지벽보 첨부 또는 인쇄물 배부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무방함(2010. 2. 26. 회답).

● 당원모집을 위한 인터넷 광고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터넷광고하는 것은 무방함(2010. 2. 22. 회답).

●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이용한 정당의 정강·정책 광고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강·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무방함(2010. 1. 25. 회답).

● 정당의 정강·정책 신문광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37조에서 정당의 중앙당이 일간신문 등에 행하는 신문광고의 시기와 횟수, 규격,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제한기간 중의 신문광고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
(2007. 11. 30. 회답).

□ 당원협의회 등

● 당원협의회의 지역분회 설치

정당이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협의회 내부기구로 지역단위 조직을 둘 수 있음. 다만, 당원협의회의 지역분회가 홍보물·벽보·현수막을 제작하여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첩부 하거나 이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와 양태에 따라 「공직 선거법」 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2005. 9. 27. 회답).

● 국외 당원의 모임체 구성

정당이 국외에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며,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할 수 있음(2005. 9. 8. 회답).

● 해외의 자발적 당원모임의 명칭

「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으므로 국외 당원들의 자발적 모임체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됨 (2010. 1. 15. 회답).

●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의 단체

정당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것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한 「정당법」 제3조와 국회의원 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해외지부를 인정하지 아니한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위반 될 것이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상 무방함. 다만, 이 경우에도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그 단체의 활동 등이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제89조제1항 또는 제254조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됨(2009. 2. 4. 회답).

● 정당 기구의 명칭 사용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후원하는 재외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상 무방함. 다만 자발적인 모임체가 중앙당 또는 시·도당 하부조직에 이르거나 중앙당 기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2010. 11. 15. 회답).

● 시·도당의 출장소 설치

「정당법」은 제3조에서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여 지구당과 당연락소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는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당의 출장소 또는 제2사무소를 경기북부지역에 두는 것과 같이 특정지역의 정당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당의 출장소 또는 제2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은 위 법률 규정에 위반됨(2008. 8. 13. 회답).

□ 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 정책연구소의 영리사업

「정당법」 제38조에 의하여 설치된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됨(2011. 7. 12. 회답).

● 정책연구소 내부기구로 교육연수원 설치 등

-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정당정책 개발·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원을 교육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을 정책연구소 내부기구의 하나로서 정책연구소 사무소에 두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정당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정책연구소는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므로, 정책연구소 내부기구인 교육연수원에서 일반인·당원 등을 교육·연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배분·지급받은 경상보조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2008. 7. 18. 회답).

● 정책연구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처리

정당의 소멸(자진해산)에 따라 당해 정당의 정책연구소가 해산하는 경우 정책연구소의 잔여재산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라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잔여재산은 당헌과 해당 정책연구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2008. 7. 18. 회답).

● 정당이 복수의 정책연구소 설치·운영

정당에 2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정당이 복수의 정책연구소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정당법」 제30조, 보조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8조, 사조직 및 유사기관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7조·제89조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2008. 7. 17. 회답).

● 정당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운영

정책연구소를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두도록 하는 「정당법」 제38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책연구소 분사무소(분원)를 설치하고 유급연구원을 두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7조·제89조·제113조·제114조·제230조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임. 다만, 분사무소(분원)를 시·도당의 내부기구로서 시·도당의 사무소에 둘 수 있음(2006. 3. 21. 회답).

● 도당 산하 정책연구원의 설치·운영

정당의 조직·구성에 관하여는 「정당법」 등 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당헌·당규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당헌·당규에 의하여 도당 내부기구로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은 법인의 형태로 하더라도 무방하며, 도당의 정책연구원은 도당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수에 포함됨(2005. 5. 9. 회답).

□ 자진해산

● 지구당 자진해산시 대표자의 신분상실 시기

지구당 대표자로서의 신분은 당해 지구당이 자진 해산결의를 한 때에 상실되는 것으로 봄(2003. 3. 21. 회답).

● 자진해산한 정당의 당원의 자격

정당이 자진해산을 하여 「정당법」 제40조(해산과 등록취소 등)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 정당의 당원이었던 자는 모두 당원자격이 상실되어 별도의 탈당 절차없이 다른 정당에 입당할 수 있음(1998. 10. 1. 회답).

▶ 판례

●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누구든지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8.경 광주 ○○구 ○○동소재 ○○빌딩 4층에서 ○○당 당원 105명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 운영이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아시아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 1. 25. 제2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2006. 1. 16. 개최된 이○○의 ○○당 동구지역위원장 취임식 및 ○○당 당원필승대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 광주 동구 출마예정자들을 위 연구소 운영이사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주○○ 등 ○○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기초·광역의원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고, 2006. 4. 13. 위 사무소에서 이○○이 이의 제기한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당 후보로 공천받은 손○○의 공천 부당성’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운영이사 23명(5. 31. 지방선거 출마자 19명 포함)을 소집, 제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당 공천을 받아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손○○에 대하여 ○○당

중앙당 재심위원회의 재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손○○의 공천에 대하여 부당성을 결의한 후 그 결과를 ○○당 중앙당 사무국에 제출하고, 2006. 4. 19. 위 사무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기초의원 ○○당 공천신청자 17명을 상대로 ‘○○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 위원장인 피고인의 추천방식에 의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후보사퇴서, 위임장 등을 제출 받아 정당사무를 취급하는 ○○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광주지법 2007. 1. 25. 선고 2006고합413 판결).

● “민주신당”과 “민주당”의 유사명칭 해당여부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이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두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명칭이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공통된 단어가 요부(要部)에 해당하는지, 요부에 해당될 경우 공통된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요부가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에 있어서 ‘신(新)’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부분은 ‘민주’라 할 것이므로, 결국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요부가 ‘민주’로 동일하여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법 2007. 9. 3. 결정 2007카합 2360).

●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행사한 경우 적용법조

입당원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후 위조한 입당원서를 정당의 지구당 사무국장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것은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 위조·변조) 및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위반죄로 처벌된다(대전지법 2004. 9. 1. 선고 2004고합304 판결)

● 당내경선심사위원회에 금품제공 및 몰수

누구든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에 있어 후보자 등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4. 6. 5. 실시한 용산구 한강로 2동·3동 구의회의원 재선거의 ○○당 후보자인 자로서 2004. 5. 10 22 : 30경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36-1 도로상에서 2004. 5. 11. 실시하는 한강로 2동·3동 구의회의원 재선거 □□당 후보자 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당 당원으로 경선심사위원인 김○○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증 제1 내지 4호)을 제공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5. 1. 11. 선고 2004노2205 판결).

● 경선대회에 참석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

누구든지 정당의 경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후보자 또는 당직자로 추천 및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5. 17. 10 : 00경 여주시 학동 소재 구 엘지텔레콤 건물 4층에 마련된 ○○의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날 14 : 00경 광주 동구 소재 구동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당 전라남도 도지사 보궐선거 후보자 경선에 입후보한 ○○을 당선되게 하고 나아가 2004. 6. 5. 실시되는 전라남도 도지사 보궐 선거에서 □□당 소속으로 입후보할 예정인 ○○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경선선거인단인 80여명이 이용할 버스 등 차량 9대의 사용료 162만원 및 식사비 40만원 합계 202만원을 제공하여 □□당 전라남도 도지사 후보자 경선과 관련하여 위 선거인단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도지사 보궐 선거에 관하여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10. 8. 선고 2004고합148 판결).

● 당내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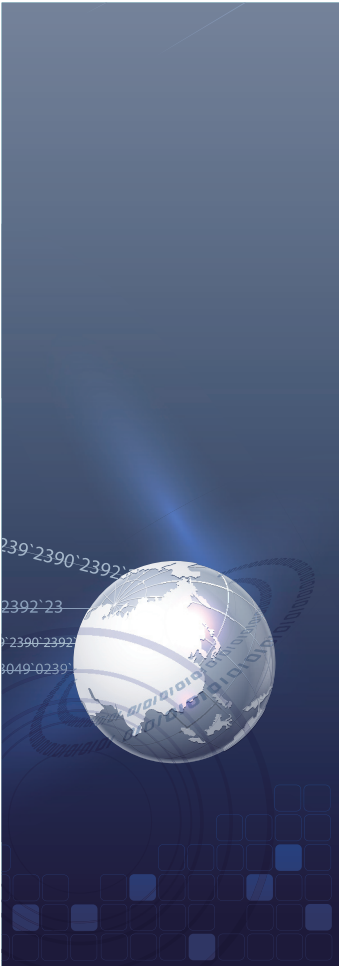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에 있어 후보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 당원인 자로서 2004. 5. 14 11 : 00경 부산 △△구 소재 ○○Hits 2층방에서 위 ○○당 △△구청장 후보경선의 선거인인 공소와 1, 2, 3, 4, 5에게 “제가 잘 아는 □□형님이 이번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데 제 얼굴을 봐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 □□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1’에게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고, 2,3,4,5에게 각 현금 500,000원을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동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여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당의 당내 후보자 선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 8. 6. 선고 2004고합137 판결).

● 당내경선 관련 교통편의제공

2004. 2. 26. 10 : 00경부터 13 : 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정생동, 산성동, 석교동, 대흥동 등지에서 미리 렌트한 승합차 2대와 공소외 김○○ 소유의 승합차 1대에 위 박○○을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 당원 약 45명을 태워 경선장소인 위 대전시민회관까지 운송 함으로써 동인들에게 승합차 3대의 렌트비용 및 유류비에 해당하는 약 170,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박○○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당의 대전 중구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선출에 있어 위 박○○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4고합206 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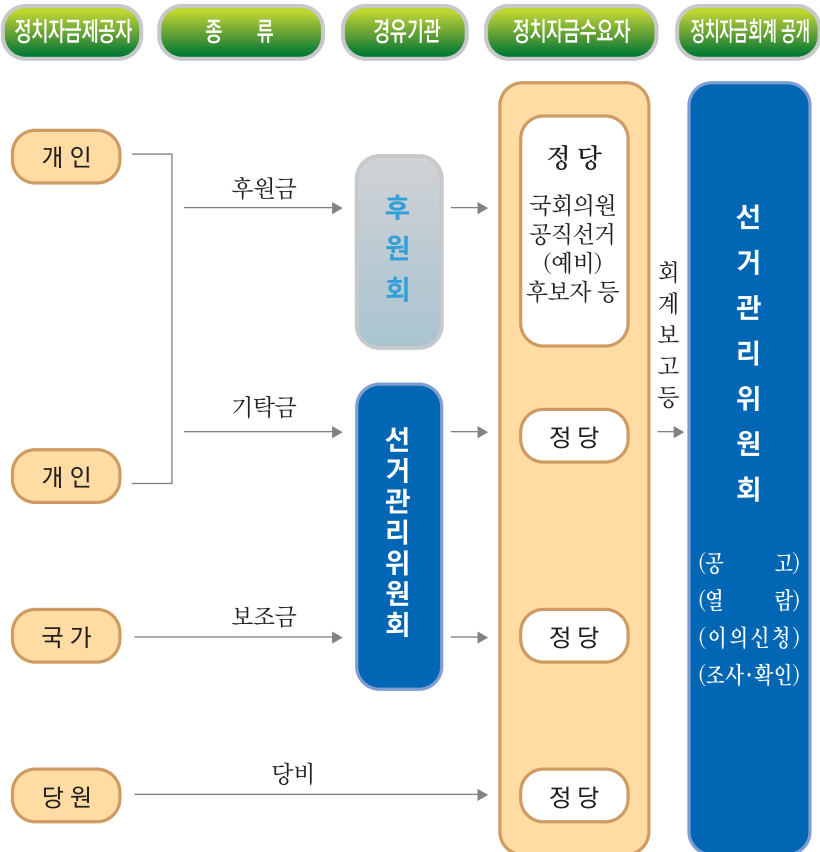


정 치 자 금 법



I. 개 요

01 정치자금의 흐름도



02 정치자금의 기본원칙(제2조)

● 정치자금 기부(조달)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함

※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외 행위를 말함.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봄

● 정치자금 운영 및 회계공개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함

● 정치자금 지출용도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함.

- 가계의 지원·보조
-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지출

-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함
 -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 선거비용 : 20만원
- 현금으로 연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제한
 - 정치자금 :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 선거비용 :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03 정치자금 기부제한(제31조·제32조·제33조)

● 외국인, 법인·단체 관련 기부제한

-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 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음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음

04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5조제1항)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05 면세(제59조)

-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기부자의 소득액에서 공제함
- 다만,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정치자금 기부(조달)

● 당직자경선 기탁금의 모금

당직자경선 기탁금은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정치자금에 해당되므로 그 비용을 당원들이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것은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제1항의 규정에 위반됨(2005. 3. 4. 회답).

● 대통령선거 경선후원금의 사용범위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경선후보자의 경선키탁금을 국회의원후원회로부터 국회의원인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2007. 4. 27. 회답).

● 단체의 규약에 따른 소속 회원 공직선거 기탁금 지원

입후보예정자가 공직선거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기탁금의 일부를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지원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제31조 및 제45조에 위반됨(2010. 2. 2. 회답).

●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선거지원금 지급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에게 선거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됨.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 한도에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수개의 후원회(국회의원 후원회 등 「정치자금법」 제6조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설립한 모든 후원회를 말함)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총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2010. 3. 25. 회답).

● 국회의원 정책자료집 발행비용 부담

국회의원이 부담해야 할 정책자료집의 발행비용을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법인·단체 포함)으로부터 협찬받는 것은 같은 법 제2조(기본원칙)의 규정에 위반됨(2005. 10. 27. 회답).

● 정당이 후보자로부터 정치자금 차입

정당은 선거비용 등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례대표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할 수 있음(2006. 4. 28. 회답).

● 정당의 후원금 차입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은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 아니하는 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소속 도당에 빌려 주고 이후 도당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음(2005. 4. 13. 회답).

● 후원회지정권자의 차입금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변제

당내경선후보등록시 납부할 경선거탁금을 우선 금융기관에서 후보자의 명의로 차용하여 납부한 후 추후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에 입금된 금액으로 후보자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2005. 3. 5. 회답).

● 후원금 전환을 전제로 한 정치자금 차입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 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에 위반됨(2010. 5. 4. 회답).

●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 공개 차입

공직선거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을 공개적으로 차입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 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에 위반됨(2010. 4. 5. 회답).

● 정당의 바자회 개최

정당이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바자회에서 판매할 물품을 소속 당원으로부터 무상 또는 원가로 제공받아 그 물품의 통상거래가액(원가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당비로 수입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당원이 아닌 자로부터 그 물품을 지원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에 위반됨(2009. 11. 2. 회답).

● 여행사의 단체여행에 대한 가격할인

여행사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가격할인을 받는 것은 무방함(2010. 3. 2. 회답).

●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정치자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음(2005. 11. 7. 법제처 해석).

□ 정치자금 지출용도

● 정당의 정치자금 대출 및 상환

정당이 선거에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을 선거일후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비용으로 변제할 수 있음(2007. 11. 16. 회답).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후보자추천 심의로 납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2008. 2. 4. 회답).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포럼의 연회비 납부

정치자금으로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국회야동청소년미래포럼’의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함(2009. 5. 12. 회답).

● 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이 소속한 단체 회비 납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납부하는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2009. 6. 18. 회답).

● 정치자금으로 청년연합회 회비 지출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청년연합회 상임고문으로 가입하여 그 연합회 정관에 의거한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함(2010. 6. 23. 회답).

● 의정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지출

의정활동과 관련한 연구용역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함(2011. 1. 27. 회답).

● 정치자금으로 번역서 출판비용 지출

의정활동 또는 입법활동에 활용하기 위하여 저서를 번역하는 경우 그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그 번역자료를 직무상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외에 무상배부 또는 판매하기 위한 출판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2005. 10. 6. 회답).

● 정치자금으로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식대 등 지출

지역현안에 대한 간담회 개최에 소요되는 식대 등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제공 또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 사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2항에 따른 7천원 이하의 식사 제공 등 같은 법상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한 경우 외에 당해 선거구민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2009. 3. 3. 회답).

● 정책간담회 토론자에게 식사제공

통상적으로 학계나 정치권 등의 주관으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의 경우 토론자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바와 같이, 토론자의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간담회·토론회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됨(2007. 3. 2. 회답).

● 국제회의 참석 및 관계자 면담경비 정치자금 지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관계자를 면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함(2009. 1. 15. 회답).

● 친선외교활동을 위한 기념품 제작

국회의원이 주한 외교사절을 만나거나 의원친선 외교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을 방문했을 때 접견자 및 관계자들에게 우정의 표시로서 한국의 전통문양으로 만들어진 의례적인 기념품(의원명 명기가능)을 제작 또는 구입하여 수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이를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2005. 2. 4. 회답).

●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한 차량 임차

정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임차·사용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이나,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2009. 1. 9. 회답).

●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공동 사무실 운영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공동사무실의 사용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분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2010. 11. 29. 회답).

● 정치자금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사무소 설치비용 등 지출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두는 사무소 임대료, 집기구입·설치비, 사무소 운영비 등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89조에서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2010. 9. 15. 회답).

● 정치자금으로 스마트폰 구입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국회의원 본인 및 보좌진에게 정치자금으로 스마트폰을 구입(임대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구입하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보고하여야 하며, 이후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2010. 2. 11. 회답).

● 국회의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산 처분

국회의원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후원회 및 국회의원사무실 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복사기·책상·책장 등의 재산을 국회의원 본인이 매입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감안한 통상적인 거래 가격을 정치자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무방함(2008. 3. 13. 회답).

● 정치자금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비용 지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소요되는 변호인 선임 등의 비용을 중앙당 정치자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함(2010. 2. 10. 회답).

● 정당활동 권한 침해 등에 대한 소송비용 지출

정당이 정당활동 권한에 대한 침해 등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등의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2010. 4. 15. 회답).

●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출

정당의 대변인이 대변인 논평과 관련하여 언론사와 명예훼손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중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정치활동에 소요된 경비로 볼 수 있으므로 소송의 결과에 불문하고 정당 또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2006. 5. 3. 회답).

● **국회의원 정치자금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보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있으나,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보아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음(2006. 11. 7. 회답).

● **정치자금으로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함(2010. 2. 24. 회답).

● **함께 공소 제기된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된 사건의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

별개의 공직선거법위반사건으로 공소 제기된 경우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된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 이 경우 그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가 소송 수행과정에서 무죄사건에 출연한 노력과 비용의 정도에 따라 산정한 비용 상당액이 될 것임(2009. 4. 29. 회답).

● **구호·자선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국회의원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구호·자선활동을 하는 경우 공선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기부금에서 지출할 수 있음(2004. 12. 23. 회답).

● **정치자금으로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 후원**

정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사회단체에

제공하는 의연금품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함(2009. 9. 11. 회답).

● 국회 인턴직원의 정책연구개발비 지급

국회의 인턴직원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인턴직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외에 추가로 정책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국회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보수외에 추가로 국회의원이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 있음(2005. 4. 13. 회답).

●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근조기 제작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의금 제공이 제한되는 국회의원이 타인의 조사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게시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조기를 제작하는 비용은 국회의원의 지위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필요한 범위 안이라면 수량은 제한되지 아니함. 다만, 근조기를 제작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 선거구민의 조사에 제공하여 내걸게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가 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08. 3. 4. 회답).

● 정치자금으로 연하장 구입·발송경비 지출 등

국회의원이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 소속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없이 의례적인 연하장을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2009. 12. 31. 회답).

- **정치자금으로 동료 국회의원 등에게 축·부의금품 제공**

국회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등의 경조사에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없음(2005. 10. 24. 회답).

- **동료 국회의원에게 지역특산물 제공**

국회의원이 공선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행위제한대상자가 아닌 동료 국회의원에게 규정을 맞이하여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도리로서 행하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음(2005. 2. 4. 회답).

- **벌금의 납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벌금의 납부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의 지출에 해당되므로 정치자금에서 지출할 수 없음(2005. 2. 22. 회답).

▶ 판례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의 의미**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의 개념을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하면서 금품의 무상대여까지도 기부로

본다고 명시하여 이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방송인수를 위한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받는 등 일정한 경우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다 해도 당초 정치자금 명목으로 수수된 이 사건 금원은 정치자금법상의 ‘기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을 받는 당사자를 정당이나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등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이 제공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수수한 공소외 2가 당시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공소외 1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위 선거자금으로 수수하고, 그 중 일부를 실제로 선거운동 경비에 소비하기도 한 공소외 2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의 의미

‘사적 경비’란 가계에 대한 지원이나 보조,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대여, 사적 모임의 회비나 그에 대한 지원경비, 개인적인 여가나 취미활동을 위한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의미하고, ‘부정한 용도’란 이러한 사적 경비 이외의 경우로서 정치자금의 지출목적이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지출의 목적, 상대방, 지급액수 및 전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하여 그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982).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기부 제한

정치자금법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담보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이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기부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6307 판결).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 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 그 차용금 자체를 기부 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유상대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전을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대여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때에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율 등과 실제 이율과의 차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몰수·추징의 대상도 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 7436 판결).

● 동창회비 등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후원할 목적으로 정치자금 기부

피고인 1은 ○○제약회사 ○○지점 차장으로서 제20회 동창회장

이고, 피고인 2는 ○○일보 광고국장으로서 ○○상고 제20회 동창회원 겸 총동문회 사무총장인바,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에 ○○당 후보로 출마한 양○○을 후원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안에서 동창회 등을 개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4. 4. 10. 18 : 30경 광주 ○○구에 있는 은강한정식당에서 ○○상고 동창인 피고인 2의 ○○일보 광고국장 승진 등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상고 제20회 동창생 등 24명을 모이도록 하여 식사를 함께 하면서 동창인 양○○의 국회의원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할 후원금조로 위 모임에서 각출한 200,000원과 이미 적립되어 있던 동창회비 중 800,000원을 합하여 1,000,000원을 마련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가 실시되는 광주 ○○구에서 ○○상고 동창회를 개최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 : 30경 광주 ○○구에 있는 양○○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000,000원을 마련하고, 피고인 2는 양○○후보의 사무국장에게 위 1,000,000원을 ○○상고 동창회 명의로 양○○후보에 대한 후원금조로 건네줌으로써 국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고합336 판결).

●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입법취지는 앞서 입법연혁과 관련하여 살핀 바와 같이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의 취지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 행사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여기에 ‘단체’ 개념의 관용적인 용례를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지칭하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1회적이지 않은) 모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개념적으로 ‘법인’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나,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금지를 함께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 상의 ‘단체’는 ‘법인이 아닌 단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어떠한 모임이 이와 같은 의미의 ‘단체’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단체가 권리능력이 있는지 여부나 독자적인 기본권 주체가 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체 내부에 구성된 위원회 등 부분 기관이나 하위 기관도 이에 포섭될 수 있다. 나아가 단체의 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방지하기 위한 이 사건 기부금지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자금이 자연인 개인의 소유로 적법하게 귀속된 상태에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이 단체 내부에서 이루어진 구성원들의 자발적 정치자금 모집, 기부행위까지 금지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심지어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까지 포함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의 의미내용에 비추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즉 단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기부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금원을 각출한 경우에도, 그러한 금원의 모집·조성이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의미의 단체의 이름으로, 그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사건 심판

대상법률조항들에 의하여 누구든지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과 같이 적법하게 개인의 소유로 귀속된 상태에 있는 금원을 개인이 정치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헌법재판소 2010. 12. 29. 결정 2008헌바89).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과 관련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절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 목적과 아울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치자금법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종합하면, 정치자금법 제6장의 기부제한에 관한 규정은 그 제1장부터 제5장에서 허용하고 있는 절차와 한도에 따른 정치자금의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특히 같은 법 제32조는 비록 정치자금의 수수가 위 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조항이 정하는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공직선거,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 공법인 등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거나 정경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치자금의 수수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서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으므로 그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이상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청탁 또는 알선행위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자의 직무활동 범위에 속한다거나 나아가 그 청탁 또는 알선의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 또는

그에 관한 정치자금 기부행위가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와 한도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한 행위의 의미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한다는 의미는 상대방에게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할 의사가 없는데도 알선행위자와의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마지못해 정치자금을 내게 된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부당하게 정치자금의 기부를 하도록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나 정도도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정도면 족하며 협박죄에서와 같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공갈죄에서와 같이 상대방을 외포시킬 정도의 억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 482 판결).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성격 등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단서 규정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민법상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친족 간의 정의(情誼)를 고려할 때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 받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책임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지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사유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기부받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한 친족관계 없는 자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본문에서 말하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책임은 조각된다.

친족 간의 정치자금 기부행위 불처벌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 규정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위반죄를 범한 공동정범 중에서 실제로 자금을 출연하여 기부를 실행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사실상 기부의 알선에 가까운 행위를 한 공동정범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혈족의 범위를 정한 민법」 제768조에서 말하는 ‘형제자매’라 함은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므로, 이복형제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친족’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판결 2007도7062).





Ⅱ. 당 비

01 당비(제4조)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함

- 정당은 소속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음
-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 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함

02 당비영수증(제5조)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해당 연도에 발급받은 당비에 대하여 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12월31일 현재의 회계
보고(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다른 회계보고를 말함)를 하는 때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함

- 발행·교부방법
 - 1회 1만원 초과 : 당비납부 횟수 만큼 1매씩 발행·교부함
 - 1회 1만원 이하 : 해당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함)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음
-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
-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영수증 원부를 보관해야 함
-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인터넷결제에 의한 납부 등으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영수증 발급
 - 당원명부 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후 영수증을 교부함
 - 당원명부 등을 통해서도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급여에서 당비 공제 납부

정당가입이 금지되지 않는 자로서 당원명부에 등재된 경우 그 당원이 소속된 회사가 소속 직원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급여에서 당비를 공제하여 그 직원이 정하는 정당에 당비를 납부(그 소속 직원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당비에 대하여는 예금계좌 입금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하여야 함)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정당법」 제42조에 위반될 것이며, 업·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당비납부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33조에 위반됨 (2010. 11. 5. 회답).

● 중앙당 등록 전 당비 납부 등

- 중앙당이 등록되기 전에 창당되어 등록된 시·도당에 납부한 당비는 「정치자금법」 제59조의 면세대상 정치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등록한 시·도당에 납부된 당비를 중앙당을 거치지 않고 해당 시·도당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는 「정당법」 제31조에 따라 당비 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는 당해 정당이 판단할 사항임.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에 입금된 발기인회비와 등록한 시·도당에 입금된 당비를 서로 지원하고 지원받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그 회계처리는 중앙당 및 시·도당의 회계처리 절차·방법 등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임.

- 창당준비위원회는 발기인으로부터 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정치자금법」상 정당 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창당준비
위원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함(2009. 12. 10. 회답).

● 「KT포인트」로 당비납부

당원이 자신의 KT포인트로 당비를 납부하는 것은 무방함(2008. 7.
7. 회답).

● 은행지로를 이용한 당비 납부

정당의 당헌·당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당비를 은행지로를 이용하여 수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영수증을 발급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함
(1995. 12. 21. 회답).





Ⅲ. 후원회

01 후원회지정권자(제6조)

다음의 후원회지정권자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음

-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 당선인 포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은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를 따로 둘 수 없음

- 당대표경선후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후보자

02 후원회 등록신청(제7조)

후원회의 대표자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등록신청사항
 - － 후원회의 명칭
 - － 후원회의 소재지
 - － 정관 또는 규약
 - －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첨부서류]

- － 후원회 결성 회의록 사본
- － 대표자 취임동의서
- －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서
- － 후보자등록 확인서류(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에 한함)
- 변경등록신청
 등록신청사항 중 “후원회의 명칭, 후원회의 소재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03 후원회 겸임지정 신고(제7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국회의원후원회를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음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기존의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를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로 지정할 수 있음

- 후원회 검입지정을 받은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대표자는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지정서와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을 첨부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후원회 검입지정 신고의 경우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04 후원회의 회원(제8조)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단체와 「정당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 국회의원선거권이 없는 자

－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함

－ 사립학교의 교원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함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2011. 7. 21.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부칙에 의하여 2012. 7. 22.부터 전임강사의 명칭은 폐지되고 종전의 전임강사는 조교수로 봄

05 후원회의 사무소 등(제9조)

● 후원회사무소와 연락소 설치

－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

서울특별시와 그 지역구에 사무소 또는 연락소 각 1개소(사무소를 둔 지역구 안에는 연락소를 둘 수 없음)

－ 그 외의 후원회 : 사무소 1개소

●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 후원회의 사무소와 연락소 : 모두 합하여 2명 이내. 다만, 대통령 예비후보자·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국회의원이 지역에 두는 사무소 : 5명 이내. 다만,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2이상의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함)·군으로 된 경우 2를 초과하는 구·시·군마다 2명을 추가할 수 있음.

※ 국회의원지역구가 2개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5명까지, 3개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 2명을 추가하여 7명까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음

06 후원금의 모금·기부(제10조)

-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 후원인(회원과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함)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여 이를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함. 이 경우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 외의 차입금 등 금품은 기부할 수 없음
-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체 없이 이를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함

07 불법후원금의 반환(제18조)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함
-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하여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수령을 거절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등의 유급사무직원의 급여

「정치자금법」 상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와 후원회의 사무소에 두는 유급사무직원의 급여한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통상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과도하게 제공하거나, 수당·활동비 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운동(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운동을 포함함)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제135조, 제230조,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에 위반됨(2007. 6. 26. 회답).

● 후원회의 기능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상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이므로 그의 지정권자가 아닌 불우시설이나 자선단체 등에 후원금품을 기부할 수 없음(2004. 7. 3. 회답).

●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장소 대여비 지출

후원회 창립총회 개최장소 대여비는 후원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후원회가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음(2010. 3. 23. 회답).

● 사회단체의 후원금 모금 대행

사회단체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아니므로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이를 대행할 수 없을 것임(2008. 1. 8. 회답).

● 인터넷 운영업체를 통한 후원금 기부 등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 모금의 주체가 아닌 업체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이를 대행할 수 없음(2007. 2. 14. 회답).

● 후원회 정기총회 개최시 문화공연 가능 여부 등

-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회원총회에서 정하여야 하는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후원회 명부에 등재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식전행사로서 간단한 문화공연을 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의례적인 축하 또는 당해 지정권자를 소개하는 영상물(의정활동보고용 영상물의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 전까지에 한함)을 상영할 수 있음. 다만, 정치자금의 모금을 위하여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정권자의 선거운동에 이를 수 있는 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해당 각 법조에 위반됨.
- 후원회원의 자격취득시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당원자격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23조를 준용할 수 있음. 다만, 정기총회를 앞두고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총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개최목적·참석대상·행사내용·선거시기 등 양태에 따라 회원총회를 구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후원회가 후원회원에게 단순히 후원회 일정을 고지할 수 있음.
- 후원회는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후원회가 명사초청강연회를 개최하거나 교양강좌를 운영할 수는 없으나, 후원회원들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지정권자를 선전하는 행위 없이 후원회와 무관하게 회원간의 친목도모 등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음.

- 후원회의 정기총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인 회원에게 다과류의 음식물을, 후원회가 제공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특정 후원회원이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5조에 위반됨(2007. 1. 31. 회답).

● 후원회준비위원회의 후원금 약정서 체결행위

「정치자금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록을 하기 전에 후보자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원회 등록이후 후원금품을 기부할 자들로부터 후원금 약정서를 받은 후 후원회 등록 직후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0조·제45조의 규정에 위반됨(2006. 5. 3. 회답).

● 후원회대표자가 후원금으로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축·부의금 제공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기부)의 규정에 의하여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는 외에는 이를 지체 없이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여야 하므로 후원회의 대표자가 후원금으로 소속 유급사무직원 등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2005. 10. 21. 회답).

● 후원회의 금전차입

국회의원후원회가 금품모집 안내 등 금품모집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으나, 지정권자에게 기부하기 위하여 차입하여서는 아니됨.

이 경우 그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며, 모집금품이 부족하여 차입금을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후원회에서 변제하여야 함(2005. 6. 16. 회답).

● 후원회 창립총회 현장에서 후원금 모집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후부터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있으므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기 전에는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2004. 11. 8. 회답).

● 후원인의 반환요구에 따른 후원금 반환

후원인의 의사에 반하여 입금된 후원금을 후원회가 해당 후원인의 요구에 따라 반환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아니함(2010. 2. 2. 회답).

● 비례대표국회의원인 지정권자가 지역구국회의원이 된 경우 불법후원금의 반환

후원회 지정권자인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이 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가 기부받은 후원금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후원금이라면, 비례대표국회의원후원회와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는 별도의 후원회가 아니므로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라 불법후원금 반환을 하여야 함(2009. 4. 14. 회답).

● 의사능력 흠결상태에서 기부한 후원금의 반환

후원인이 기부 당시 자신이 행하는 후원금 기부행위의 의미나 결과·효과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후원금을 기부한 것이라면, 후원회 또는 그 후원회지

정권자가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2009. 1. 28. 회답).

● 잔여재산 인계 후 불법후원금의 반환

정당이 「정치자금법」 제21조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후원금 중 일부가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때에는 그 후원금을 당해 후원인에게 반환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함(2008. 5. 23. 회답).





Ⅳ. 후원금 모금·기부한도

01 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11조)

- 후원인의 연간 후원금 기부한도
 -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한도 : 2천만원
 - －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기부한도

구 분	기부한도액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후원회마다 1천만원
국회의원후원회·국회의원후보자등 후원회,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후원회마다 500만원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천만원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는 합하여 500만원

※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 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에 “연간”은 당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

– 후원인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함. 다만,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익명기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음

● 후원금 국고귀속

–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금액
–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

02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제12조)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국회의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의 후원회	각각 1억5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 5천만원

03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제13조)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

선 거 별	2배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회
대통령선거	대통령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 원후원회

※ 무소속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회는 그 지정권자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의 후보자로 등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2배를 모금·기부 할 수 있음

※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함

-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후원인의 익명기부한도 초과시 처리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익명 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며, 「정치자금법」 제18조에 따라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 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임(2009. 4. 15. 회답).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 등

-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기간은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해당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의 말일까지임(그 기간 중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그 후원회의 존속기간 중을 말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하여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원회의 수입계좌를 이용하여 모금하여야 함(2008. 3. 10. 회답).



V. 후원금 모금방법 및 고지광고

01 후원금 모금방법(제14조)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에 의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에 의한 모금 그 밖에 이 법과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음. 다만,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음.

02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6조)

-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을 할 수 있음
- 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 원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함

03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제15조)

후원회는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수 있음. 다만, 다른 정당·후보자(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말하며,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음

-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이용한 후원금모금 또는 회원모집 광고
 - － 주체 : 후원회
 - － 매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신문(신문과 별개로 정의된 인터넷 신문은 제외됨)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정기간행물
 - － 횟수 : 분기별 4회 이내. 다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이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4회 이내
 - ※ 광고횟수의 산정에 있어서 같은 날에 발행되는 하나의 정기간행물을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봄. 이 경우 같은 날에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이 배달되는 지역에 따라 발행일자가 각각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도 그 광고횟수는 1회로 봄
 - － 의무 게재사항 : 광고근거, 후원회 명칭
 - － 광고규격
 - 신문광고는 길이 17센티미터, 너비 18.5센티미터 이내

- 신문 외의 광고는 당해 정기간행물의 2면 이내
- 인쇄물·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정치자금사물관리 규칙 제19조)
 - － 인쇄물·시설물 등에 의한 고지

주 체	고 지 방 법
후원회	가.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함. 이하 같음)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 포함) 발송
후원회의 지정권자	가. 전화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당해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 바.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 사. 「공직선거법」과 당헌 등에서 정한 당해 당내경선 운동방법

- － 다음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을 통한 고지
 -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 및 비서

－ 후원회 발송 안내장의 규격 등

-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 봉투 의무 게재사항 : 발송근거, 후원회 명칭
- 발송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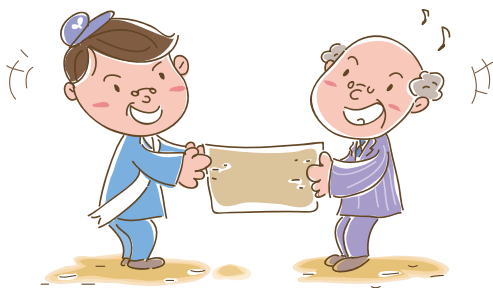
대통령경선후보자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
후원회 : 제한 없음

※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3천통 이내로 제한되며, 대통령
선거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발송할 수 없음

-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 시·도별 2만통 이내
- 지역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및 자치구·시·군의
장후보자후원회 : 3천통 이내
- 시·도지사 후보자후원회 : 2만통 이내

－ 발송방법 : 우편발송, 당해 후원회 및 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
하여 방문객에게 배부,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
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

※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부하는 경우에는 안내장에 배부
근거와 후원회 명칭을 게재하여야 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후원금 모금방법

● 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집회 개최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에 따라 회원모집을 고지·광고하거나 친교가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단순히 입회를 권유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밖에 회원모집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지정권자인 당해 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및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됨(2008. 2. 29. 회답).

● 후원금납부자에 대한 감사전화의 대행

후원회가 후원금 납입자에 대한 감사의 전화나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여부의 확인 또는 영수증 우송 등 단순한 역무를 전문업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이 경우 대행업체가 감사의 전화 등 단순한 역무의 범위를 벗어나 정당 또는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하여서는 아니됨(2007. 11. 1. 회답).

● 거리 등에서의 후원금 모금

선거운동기간전에 대학교 구내 또는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후원금 기부를 권유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됨(2010. 5. 14. 회답).

□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 후원회의 회원모집 등

- 후원회가 후원금의 모금·회원의 모집을 위한 안내장을 작성하여 후원회의 사무소에서 방문객에게 배부하는 경우 그 배부수량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9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의 규정에 의한 안내장의 발송통수에 포함됨.
- 국회의원에비후보자후원회의 회원 등이 후원금의 모금·회원의 모집을 위한 안내장을 거리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보여주면서 후원금의 기부 또는 회원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후원금 모금 또는 후원회 회원 모집의 목적을 벗어나 당해 국회의원예비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2005. 9. 27. 회답).

● 후원회사무소 간판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 고지 등

「공직선거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후원회사무소에 통상적인 간판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간판에 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 등을 게시하는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를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행위시기에 따라 같은 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됨(2010. 5. 13. 회답).

● 후원회 공동대표제 및 안내장·신문광고의 게재내용 등

- 후원회 운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자를 두는 것은 무방함. 다만, 「정치자금법」 제7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정치자금법」 상의 대표자에 해당됨.
- 정치자금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후원금 안내장, 신문광고 등에 후원금 모집광고를 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대표자에 한하여 사진·인사말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정치자금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안내장 봉투나 신문광고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대표자에 한하여 후원회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 정치자금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함)가 포함되지 않은 지정권자의 활동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원회가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고지하는 안내장 등에 제3자의 덕담 등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됨.
- 후원회 등록 이전에 ‘후보자후원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준비위원회 명의로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인이나 후원회지정권자가 속한 단체 회원,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지자 등을 상대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트위터를 통하여 모금안내 등의 글을 보내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됨(2010. 5. 7. 회답).

●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안내장 직접 배부

후원회가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함)을 이용하여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배부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의 우편함에 그 안내장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제45조에 위반됨(2008. 1. 28. 회답).

●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서는,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에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임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후원회에 인계할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정치자금영수증의 내역이 기재된 ‘후원금 인수 인계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규칙 제20조 참조). 이러한 관련법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후원회 이외의 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위임과 함께 미리 교부받아 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직접 교환하는 방법으로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위임장의 교부를 요하므로 구두나 묵시적 방법에 의한 위임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도5236).



Ⅵ. 정치자금영수증

01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제17조제9항)

- 정액영수증

1만원, 5만원,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의 6종

- 무정액영수증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하여 교부.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02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제17조제6항·제7항)

- 신청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신청방법 :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와 발급수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 및 제작비용을 제출·납부. 이 경우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함

※ 발급하는 정액영수증 액면가액총액은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이 경우 후원회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정액영수증을 일시에 발급받을 수 있음

03 후원회의 후원인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후원회는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국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함)에 기부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 [국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함]를 하는 때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을 말함) 현재로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
 -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익명기부,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기부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 －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 기부자에게 교부하는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회명을 기재할 수 없음
- 정치자금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후원회에 발급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이를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됨

04 정치자금영수증 사용실태 보고 및 반납 (제17조제10항·제11항)

- 사용실태 보고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매년 12월 31일 현재 매수 등 사용실태를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12월 31일 현재의 회계 보고를 하는 때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반 납

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제40조(회계보고)에 따른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함

- 사용실태 보고 및 반납 불이행

사용하지 아니한 정치자금영수증에 대하여 기한 이내에 매수를 보고 또는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액면금액 총액을 기부받은 것으로 봄

05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인적사항 통보 요청(제17조제13항)

- 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신용카드·전화 또는 인터넷 전자결제 시스템 등에 의한 입금을 포함)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

-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 후원인이 영수증이 필요 없다며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 「정치자금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
-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후원회가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음(2010. 3. 24. 회답).

●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 초과시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시기

예금계좌 또는 인터넷전자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이 기부된 때에는 후원회는 그 초과하는 후원금에 대하여도 당해 연도말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영수증상의 「발행연월일」과 「영수 연월일」란에는 후원금이 입금된 날을 기재하고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후원회에 후원금이 입금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2005. 12. 14. 회답).

● 후원금의 휴대폰 및 신용카드 결제방식

후원인이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에 의하여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당해 후원회에 입금(도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함(2004. 12. 15. 회답).



Ⅶ. 후원회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01 후원회 해산(제19조)

- 해산사유
 - － 후지정권자의 자격상실
 - － 지정권자의 지정철회
 - －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발생
 - － 자진해산
- 해산신고

후원회대표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산신고를 함(자진해산의 경우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을,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의 경우 후원회 지정철회서를 각각 첨부함)

※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만료, 대통령후보자등·국회의원후보자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의 신분상실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를 요하지 아니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
 - － 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는 그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존속결의로써 당선된 국회의원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당선인 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로 봄
 - － 후원회의 대표자는 존속결의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후원회는 종전 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함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며,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변경등록사실을 공고하며, 등록증을 재교부함
-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예비후보자후원회는 후보자후원회로 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등록신청을 받지 않음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변경등록사실을 공고하고, 등록증은 재교부 하지 않음

02 후원회 해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제21조)

- 후원회의 잔여재산 처분
 - 처분사유 : 지정권자의 자격상실·지정철회, 정관 등의 해산사유 발생, 자진해산
 - 처분대상 : 잔여재산
 - 처분기한 : 회계보고전까지
 -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 소속 정당에 인계
- ※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어느 하나의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음

- 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인계함
-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귀속

-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 － 처분사유 : 지정권자의 자격상실
 - － 처분대상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 (「정치자금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 포함)
 - － 처분기한 : 회계보고전까지
 - 지정권자가 당원인 경우 : 소속 정당에 인계
 - ※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 또는 후원회를 둔 대통령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를 둔 경우로서 지정권자가 어느 하나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잔여재산은 해산되지 아니한 후원회에 그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후원금으로 기부할 수 있음
 - 지정권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 인계함
 - 인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귀속

- 예외적 처분
 - － 대 상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대통령예비 후보자 및 국회의원에비후보자의 후원회와 그 후원회지정권자
 - － 처분사유 : 지정권자의 자격상실(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또는 당대표경선에 참여하여 당선 또는 낙선한 때는 제외)

－ 처분대상 : 잔여재산

※ 지정권자의 경우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여재산
(정치자금법 제36조제5항을 위반하여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 포함)

－ 처 분 : 회계보고전까지 국고귀속

●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의 처리

－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

－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귀속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의 후원회지정권자 자격상실 시기

- 국회의원직 사직원을 국회에 접수하고 시·도지사예비후보자등록을 한 경우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사직이 허가되거나 같은 법 제136조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하여 국회의원의 직에서 퇴직된 때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임.
-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당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산된 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되, 회계보고 전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2010. 5. 3. 회답).

● 지정권자의 탈당과 후원회의 해산 등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을 탈당하는 것만으로는 그 후원회는 해산되지 아니함. 다만, 후원회를 둔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회는 해산하고 잔여재산은 「정치자금법」 제21조 제1항제1호·제2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산 당시의 소속 정당에 인계하여야 함(2008. 2. 12. 회답).

● 후원회 해산후 반환할 수 없는 후원금의 처리

회계보고후에 기부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나, 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5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2007. 9. 13. 회답).

● 후원회 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처분

국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은 「정치자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인 때에는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당원이 아닌 때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법인(학교법인 포함)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다만, 국회의원이 차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그 차량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음(2007. 4. 17. 회답).

● 후원회 해산후 입금된 후원금의 처리

- 후원회가 해산된 후 ARS 등으로 기부된 후원금은 「정치자금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지체 없이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정치자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 전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 회계보고 후에 ARS등으로 기부된 후원금은 후원인에게 반환하여야 함(2007. 8. 23. 회답).





VIII. 기탁금

01 기탁금 기탁(제22조)

- 기탁할 수 있는 자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 외국인,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음
- 기탁한도액
 - －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 －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함
- 기탁자 인적사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또는 그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음

02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2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기탁금을 배분·지급함



Ⅸ. 국고보조금

01 보조금의 계상(제25조)

- 경상보조금
 - － 계상금액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실시로 선거권자 총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변경된 선거권자 총수를 기준으로 계상
 - － 지급방법 : 매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선거보조금
 - － 대상선거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동시 지방선거
 - － 계상금액
 - 대상선거가 있는 연도에 각 선거마다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

- 이 경우 동시지방선거는 1개의 선거로 보고 계상
 - 지급시기 :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
- 보조금 계상단가
 - 전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에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증감한 금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년 1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 공고

02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제26조)

- 대상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 계상금액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대상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여성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

● 배분기준

구 분	배 분 기 준
1. 여 성 후 보 자 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가.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 나.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2. 여 성 후 보 자 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30 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위 1.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 나. 여성후보자를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여성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위 1.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은 위 가.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여성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
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함

● 지급시기 :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지급

03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제26조의2)

● 대상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 계상금액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대상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
-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대상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
-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장애인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함

● 배분기준

구 분	배 분 기 준
1.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있는 경우	가.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원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나. 그 잔여분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2. 장애인 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5 이상 추천한 정당이 없는 경우	가.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위 1.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

구 분	배 분 기 준
	나. 장애인후보자를 100분의 1 이상 100분의 3 미만을 추천한 정당 장애인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위 1.의 기준에 따라 배분·지급(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위 가.에 의하여 각 정당에 배분되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함

- 지급시기 :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에 지급
 -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위원회에 통보
 -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배분·지급

04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의 배분·지급(제27조)

- 배분방법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본비율을 먼저 배분한 후, 그 잔여분을 의석수비율과 득표수비율로 배분함
- 배분비율

구 분	배 분 기 준
기 본	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

구 분	배 분 기 준
기 본	② 위 ①의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의석수가 5석 이상인 정당에 100분의 5씩 배분·지급 ③ 위 ①의 배분·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인 정당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정당에 100분의 2씩 배분·지급 •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의석수 비 율	기본비율을 제외한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득 표 수 비 율	최종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

● 지급시기

- － 경상보조금 : 2월·5월·8월·11월 15일(해당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일)

- 선거보조금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2일 이내
- ※ 선거보조금은 당해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에 대하여는 이를 배분·지급하지 아니함

05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27조의2)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06 보조금의 용도제한(제28조)

-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인건비
 -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 사무소 설치·운영비
 - 공공요금
 - 정책개발비
 - 당원 교육훈련비
 - 조직활동비
 - 선전비
 - 선거관계비용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함

07 보조금의 감액(제29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하고, 회수가 어려운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이 보조금에 관한 회계보고를 허위·누락한 경우에는 허위·누락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앙당의 경우 지급한 보조금의 100분의 25에 상당

하는 금액, 시·도당의 경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08 보조금의 반환(제30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정책연구소가 해산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다음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 정당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반환

■ 정책연구소

보조금의 사용잔액을 소속 정당에 인계함. 이 경우 정당은 새로이 설립하는 정책연구소에 그 잔액을 인계하여야 하며, 정당이 해산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당의 반환에 준하여 이를 반환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 여성추천보조금을 비례대표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작비용으로 사용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일부를 여성후보자로 등록한 정당이 여성추천보조금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공보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성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그에 상당하는 경비를 여성추천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음(2008. 5. 2. 회답).

● 여성추천보조금을 예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가능 여부

「정치자금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예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할 수는 없음(2006. 5. 16. 회답).

□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의 배분·지급

● 흡수합당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기준

- 선거보조금 배분·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정당이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1명이상의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배분·지급받을 수 있음.

- A당에 B당이 흡수합당되는 경우, 합당으로 존속하는 A정당이 합당 이후 변경된 의석수와 득표수비율(합당 전 B정당의 득표수 비율을 포함함)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지급받게 됨(2010. 4. 5. 회답).

●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에 반영되는 득표수 비율 산정기준

국고보조금 배분·지급에 반영되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은 「정치자금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최근 실시한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의 비율 즉, 비례대표전국선거구 및 지역구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의 평균을 말하는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비례대표전국선거구에서 2.59%, 지역구에서 0.02%를 득표한 정당은 그 평균 득표수 비율이 1.31%이므로 보조금 지급대상 정당에 해당하지 아니함(2010. 3. 12. 회답).

□ 보조금의 용도제한

● 여성정치발전비로 지역아동센터 지급물품 구입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비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관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지급하는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성정치발전비에 해당되지 아니함(2010. 10. 15. 회답).

● 국고보조금으로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 지원

정당이 자당의 정책개발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소속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그 지급 및 정산 등은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5조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2009. 7. 21. 회답).

● 여성정치발전비를 정당의 여성국 및 여성팀 인건비로 사용

중앙당 여성국 및 시·도당 여성팀 등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기획·집행하는 부서를 둔 경우 그 유급사무직원 인건비를 경상보조금에서 지급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됨(2008. 2. 15. 회답).

● 정책연구소에 국고보조금 배분·지급

-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 전에 중앙당이 경상보조금으로 정책연구소의 사무실 보증금과 집기구입비 등 소요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이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분기별 균등하게 지급함이 없이 그 경상보조금 연간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분·지급하면 됨(2006. 8. 2. 회답).

●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 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8조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 28. 판결 2008마 1440)





X. 회계책임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01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제34조제1항·제2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선임권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책임자 1인을 공직선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 지체 없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의 대표 자
- 후원회의 대표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하는 경우를 말함).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 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선임권자가 되며, 그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각각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겸함.
- 선거연락소장(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함)

누구든지 2 이상의 회계책임자는 될 수 없으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회계책임자가 될 수 있음

-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 － 후원회간의 회계책임자
 - － 후원회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가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 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거나 대통령 선거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02 회계책임자 겸임제한(제34제3항)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그 선거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은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

03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제36조제1항·제3항)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경우 그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말함)만이 이를 할 수 있음

- 회계책임자 아닌 자가 지출할 수 있는 경우
 - － 회계사무보조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함)에게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위임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게 할 수 있음
 - － 회계책임자의 관리·통제 아래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게 할 수 있음
 - － 정치자금은 50만원(공직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는 20만원), 선거비용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관할 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지출하게 하여야 함
 - － 위와 같이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함
-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 또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선거일 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함

04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제36조제2항)

-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함.
-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함

05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의 지출(제36조제5항)

- 후원회를 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없음
- 다만,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같은 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같은 법 제60조의4에 따른 예비후보자공약집은 제외함)을 위한 경우에는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음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 선거사무원의 회계책임자 겸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정치자금법」 상 제한되지 아니함
(2010. 3. 31. 회답).

● 중앙당의 합당에 따른 시·도당의 회계처리

시·도당개편대회 전에 회계처리 단일화를 위하여 기존의 각 시·도당 회계책임자를 1명으로 변경신고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당이 「정당법」 제19조에 따라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여 동일 시·도안에 합당 전 정당의 소속 시·도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도 회계책임자를 1인으로 선임신고 할 수 있음(2008. 3. 24. 회답).

□ 회계책임자 겸임제한

● 선임권자의 회계책임자 겸임

「정치자금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임권자는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없음(2010. 4. 8. 회답).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 국회의원의 해외에서 현금(정치자금) 사용

- 국회의원 1명이 다수의 국회의원을 위하여 회계사무보조자로 위임될 수 있음.
- 해외에서의 지출에 필요한 현금을 미리 국내에서 달러 등으로 환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은 없음. 다만, 현금지출의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에 따라 1회 5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고, 연간 현금지출액은 정치자금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정치자금 지출처리는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날에 지출(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금일자와 지출일자가 같지 아니한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2009. 4. 29. 회답).

● 후원회 등의 업무용 차량 구입시 명의

- 국회의원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하여 구입한 차량은 후원회 재산관리에 대한 정당한 권한과 책임있는 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구입할 수 있음.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인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정치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국회의원이나 회계책임자의 명의로 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명세서에 포함하여 기재·보고하고, 이후 후원회 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2006. 4. 5. 회답).

● 당원협의회의 당원연수회 개최비용

정당이 당원연수회를 개최함에 있어 장소사용료·강사료·교재작성비 등 당원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치자금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하여야 함. 이 경우 그 경비를 참석당원이 부담하는 때에는 시·도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당비로 이를 납부하고 시·도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출하거나 시·도당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의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지출을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여야 함(2005. 8. 8. 회답).

□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의 수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1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 외에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없음(2007. 11. 22. 회답).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 등

- 은행에서 운영하는 CMA 계좌가 금융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예금계좌로서 원금이 보장되고 계좌이체 및 수시 입금·출금이 가능하며, 「정치자금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계좌라면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음.
-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므로 정치자금으로 주식, 펀드, 채권 등에 투자하는 등 수익활동에는 지출할 수 없음(2007. 1. 24. 회답).

□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용도의 지출

● 정기적으로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 온 선거사무소 관리비 지출

「정치자금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소의 전기료·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할 것이며,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비용은 보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2010. 4. 15. 회답).

●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 온 당비 지출

예비후보자등록 전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재산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온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출할 수 있음(2010. 4. 15. 회답).

● 후원회 등록 전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 지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여론조사비용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으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됨(2010. 2. 25. 회답).

● 국회의원의 후원회 등록 전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신고는 「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를 선임 신고하는 때에 함께 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이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 통장을 신고하기 전에 의정활동 등 정치활동을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당해 후원회 등록 후에 후원회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을 그 지출원인이 발생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음(2009. 11. 20. 회답).

▶ 판례

●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지출에 관하여 서면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경우

회계사무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완전한 의사관여 아래 그의 지시에 따른 도구로서 정치자금의 지출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위 규정 단서에 따른 서면에 의한 위임이 필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위를 겸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 지출원인행위를 한 다음 그에 따른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보조자에게 주어 인터넷 बैं킹을 통한 계좌이체 방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에서 위 증빙서류에 기재된 대로 송금을 하도록 한 경우, 위 정치자금 지출행위는 보조자가 회계책임자의 지시를 단순히 따른 것에 불과하여 회계책임자 본인의 행위로 법률상 평가되므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2. 선고 2007도6937 판결).

● 회계책임자를 신고한 후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 없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

정치자금법 제34조에 따라 회계책임자 및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신고한 후 지출되는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그 지출사유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회계책임자에 의하여, 그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출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 4721 판결).



XI. 회계보고 및 공개

01 정당의 회계보고

-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구 분	대상기간	보기기한	비 고
중 앙 당	1. 1 ~ 12. 31 현재	다음연도 2. 15까지	
시 · 도 당	1. 1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 중앙당에는 정책연구소를 포함함(이하 같음)

-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구 분	대상기간	보기기한	비 고
중 앙 당	1. 1 ~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보고기한 ↓ 선거일후 40일까지
	선거일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연도 2. 15까지	
시 · 도 당	1. 1 ~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일후 40일까지
	선거일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정 당 선 거 사 무 소	설치일 ~ 선거일후 20일 (20일후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를 포함함

- 일부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구 분	대상기간	보시기한
당해 시·도당	1. 1 ~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일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정당선거 사무소	설치일 ~ 선거일후 20일(20일후 폐쇄하는 경우 그 폐쇄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 중앙당과 선거 미실시 지역 시·도당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와 같음

-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등록이 취소되거나 해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0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보고

구 분	대상기간	보시기한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1. 1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1. 1 ~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일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 후보자가 된 경우	1. 1 ~ 경선일후 20일 현재	경선일후 30일까지
	경선일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후원회 지정철회 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상실	지정철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4일 이내	

03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

구 분	대상기간	보기기한
평년	1. 1 ~ 6. 30 현재	7. 31까지
	7. 1 ~ 12. 31 현재	다음연도 1. 31까지
연간 모금한도액 2배 모금 가능 연도	1. 1 ~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 선거일이 12월인 경우에는 평년과 같음	선거일후 21일 ~ 12. 31 현재	다음 연도 1. 31까지
후원회 해산	해산한 날부터 14일이내	

0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

- 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경선일후 20일 현재로 경선일후 30일까지
- 후원회 지정철회,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상실 또는 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



05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보고

구 분		대 상 기 간	보 고 기 한
대 통 령 선 거	정당추천후보자	정당의 회계보고 중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에 의함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	후보자 등록일전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무소속 후보자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40일까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		정당의 회계보고 중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에 의함	
공직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선거일후 20일 현재	선거일후 30일까지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가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에 자격상실 또는 해산		사유발생일후 14일 이내	

06 회계보고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42조)

- 회계보고 사실 등 공고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함

- 열람기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공고일부터 3월간(“열람기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함

- 선거비용 공개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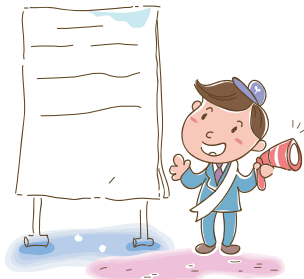
- 사본교부 신청

–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및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증빙서류 사본은 제외함)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함

- 비공개 사항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창준위도 「정치자금법」 상 회계보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정치자금법」 상 정당 등의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은 창당준비 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함(2007. 4. 12. 회답).

- **국회의원 본인재산으로 정치자금 지출하는 경우 회계보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후원회에서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아닌 본인의 재산으로 정치활동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회계보고의 의무는 없음.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당해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선거일전 120일부터 자신의 재산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여야 함(2005. 1. 20. 회답).

- **등록무효된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 등**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도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2000. 4. 18. 회답).



Ⅷ.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소속정당 등에 인계(제58조제1항)
 - －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보전받은 경우에만 인계대상에 해당함
 - －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반환·보전비용에서 자신의 재산(차입금을 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모두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추천후보자는 소속정당에, 무소속후보자는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하여야 함
-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사용(제58조제2항·제3항)
 - － 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은 인계하지 않고 그 반환·보전비용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함)에 입금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함
 - ※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이나 자신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그 반환·보전비용을 모두 지출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인계하지 않은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제58조제4항)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인계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반환·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질의선례 및 판례



질의선례

-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의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의 범위

「정치자금법」 제58조제1항의 ‘자신의 재산으로 지출한 비용’은 같은 법에 따라 회계처리된 것으로 지출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선거에 있어서 반환·보전 받은 자 본인의 재산으로 지출한 정치자금(선거비용 및 선거비용외 정치자금)을 말함(2010. 6. 4. 회답).

정당·국회의원·후원회를 위한 정당·정치자금법규 운용자료

발 행 | 2012년 3월

발 행 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홍춘말로 44
Tel. 02-503-1114(代)

편집·인쇄 | (주)삼부문화
(02-498-2341)

비매품

